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98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0.[1]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803,100원, 농어촌특별세 6,180,290원, 등록세 186,798,770원, 지방교육세 34,866,700원, 재산세 2,474,860원 등 합계 291,123,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장 기재 '2014. 9. 12.'은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5. 6. 1.부터 [redacted]구 C 3층 11호에서 'A'(이하 '개인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5. 10. 18. 같은 장소에서 광고업, 광고물 제작, 시공 및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후 2005. 11. 3.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9. 26.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6. 25. [redacted]구 D 대 193.4㎡ 및 그 지상 건물 379.85㎡(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9. 10. 원고에 대하여, B이 원고를 설립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61,803,100원, 농어촌특별세 6,180,290원, 등록세 186,798,770원, 지방교육세 34,866,700원, 재산세 2,474,86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3,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광고물 제작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광고 대행업을 주업으로 영위했던 개인사업체와는 업종을 달리하므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원고가 기존 업종인 광고 대행업에 다른 업종(광고물 제작)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출액 중 광고물 제작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4층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6. 25. 매수하여 2층 부분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각각 기존의 제3자에 대한 임대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0. 11.~12.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예정인 1층 부분을 재임대하자 2011. 4. 29. 피고로부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1층 부분에 대한 면제세액을 추징당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시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면제세액은 추징당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3) 설령 원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의무이행을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개인사업체	원고
상호	A	주식회사 A
대표자	B	B
소재지	[redacted]구 C 3층 11호	좌동
업태	제조/서비스	제조업/서비스업
종목	인쇄(실사출력)/광고대행	광고물제작/인쇄/광고대행
개업일	2005. 6. 3.	2005. 11. 1
폐업일	2005. 11. 3.	

2) B은 2005. 11. 3. '법인전환'을 사유로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다.

3) 개인사업체와 원고 사이에 2005. 12. 31.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A 을: 주식회사 A (소재지 및 대표자 동일) “갑”이 운영하고 있는 A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보장하며, "갑"이 양수도 전에 제작, 판매한 상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토록 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 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전 종업원 전원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

(별첨) 자산·부채명세

1. 자산

외상매출금	18,361,200원
집기비품	1,054,545원
합계	19,415,745원

2. 부채

외상매입금	675,000원
부가세예수금	3,590,232원
합계	4,265,232원

인수가액 15,150,513원

4) 개인사업체 및 원고가 임대인 [redacted]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redacted]구 C [redacted]층 [redacted]호(약 24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는 2006. 9. 30.경 위 건물 [redacted]호(약 45평)로, 2007. 12. 14.경 [redacted]구 E 소재 공장으로 확장이전하였고, 2010. 6.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 2층으로 확장이전하였다가 2013. 11.경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개인사업체	원고
임대인	[redacted]기업(주)	[redacted]기업(주)
임대기간	2005. 6. 1.~2005. 9. 30.	2005.11.1.~2006. 9. 30.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00만원/60만원	648만원/64만8,000원
사용목적(제1조)	사무실	공장
계약일	2005. 6. 1.	2005. 10. 24

5)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 신청 당시 제출한 2008. 9. 16.자 기술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상시근로자: 당기평균 8명(사무질: 2명, 기술직:3명, 기능직: 3명) 주요제품(상품, 용역): 버스광고대행, 버스광고물제작, 지하철광고대행 주요원재료:(서비스) 광고매체, (제조) PVC 원단, 솔벤트잉크 사업장 및 주요시설: -(생산방식) 자사제조 95%, 외주가공 5%/주문생산 100% -(주요시설) 실사출력기(투칸) 수량3, 장부가격 2억 3,000만원 양평동 옥상간판광고 수량1, 장부가격 1억 5,000만원 실사출력기(라미레스) 수량1, 장부가격 5,000만원 HP출력기 수량1, 장부가격 4,829만원 코팅기 수량1, 장부가격 1,000만원 [합계: 4억 8,829만원]

6) B이 2005. 7. 25. 개인사업체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작성한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란에는 '업태: 제조업, 종목: 상업인쇄, 업종코드: 222102'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6. 1. 25.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작성한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란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2006. 4. 25.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작성한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란에는 '업태: 제조, 종목: 광고물제작, 업종코드: 222102'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8, 11, 12, 21, 22호증, 제28호증의 1, 제30호증의 1, 제31호증의 1,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2장 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 내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2항에서 그 의미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창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각 호중 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 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1999. 8. 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분리신설한 것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의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세액감면 규정 내에 있는 '창업'의 의미를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2008. 9. 26.이므로 개인사업체 설립일인 '2005. 6. 1.' 기준으로 보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원고의 설립일인 '2005. 10. 18.' 기준으로 보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고의 설립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개인사업체였던 A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설립이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 혹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B은 개인사업체인 A를 통하여 인쇄(실사출력) 및 광고 대행업을 하다가, 약 1년 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광고물 제작, 인쇄(실사출력) 및 광고 대행업 등 유사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업체인 원고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업양수도 등을 거쳐 사업을 계속하였고, 위 개인사업체는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②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개인사업체는 주식회사 [redacted] 등 광고주로부터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의뢰받아 광고물을 제작하여 시내버스 차체 외부에 게재하였고 그 대가로 광고료 및 제작비를 지급받았다. 한편, 갑 제19, 20, 23,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광고주들로부터 버스, 옥외광고물, 지하철역 광고시설물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의뢰받아 먼저 위 각 광고매체에 관한 사용권한을 확보한 후 광고물을 제작하여 게재하였고 그 대가로 광고료 및 제작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사업형태 모두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설치·철거를 주된 의무로 부담하였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양자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옥외 및 전시 광고업(71391)[2]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A'라는 상호는 'advertisement(광고)'의 'F'와 'G'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B이 원고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A'라는 상호를 계속 이용하였던 것은 개인사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주로 취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매출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매출처 불일치는 오히려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광고업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a) 생산된 재화 또는

2)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 옥외 전시광고 · 차량간판 광고 · 전철간판 광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제공된 서비스 등 산출물의 특성, b) 원재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투입물의 특성, c)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그 분류기준으로 삼는다. 원고가 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쇄업(1811)[3],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33910)[4]은 모두 '제조업[5]'의 대분류 아래 포함되는 것인데, 광고물의 물리적 제작뿐만 아니라 광고매체 사용권한 확보 용역, 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용역까지 계약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원고의 사업형태 및 그 산출물과 투입물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

⑥ 설령 원고의 주된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더라도,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 하에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는바, 개인사업체 역시 광고주로부터 제작료를 지급받았던 이상 실제 제작은 외주로 맡겼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개인사업체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코드를 개인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와 동일하게 기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⑦ 원고가 각종 옥외 광고매체에 관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광고매체를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광고물 제작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는 유효·적절한 입증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 B의 처 H가 작성한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존 업종에 추가된 광고물 제작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고정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5)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2)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의무이행 해태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고의 설립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7

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